

# 청 주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14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업자)  
2013고단1639(병합) 공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김건, 송창진(기소), 김지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판 결 선 고 2013. 12. 13.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2013고단1474]

1. 피고인은 치과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8. 초 일자불상경 청주시 000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상·하악 어금니 4개를 보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의 잇몸에 국소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아를 연마하고 석고로 위 치아의 본을 뜬 후 불상의 치기공소에 의뢰하여 의치를 제작하게 한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의치를 ●●●의 치아에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시켜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490만 원을 받았다.

[2013고단1639]

2. 피고인은 2013. 9. 28. 22:50경 구리시 000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수택파출소 소속 경장 ○○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사돈 ◎◎◎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치과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불법의 정도,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이 후유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횡수 및 관련 이익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은 이 사건 최초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5년 전, 이 사건 판결선고 시점으로부터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태경 \_\_\_\_\_